

상반기, 산업재해 줄었지만 중대재해 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 상반기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총 44,39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재해율은 0.30%로 기록됐다. 전년 동기대비로 재해자수는 3,670명(7.6%), 재해율은 0.03%p(9.1%)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난 1/4분기 통계 당시 전년대비로 재해자가 9.2% 줄어들고 재해율이 0.02%p 감소했던 것을 볼 때, 재해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재해율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망자수는 1,03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명(0.6%) 증가하고, 사망만인율도 0.71로 전년 대비로 0.01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분기의 사망자 증가폭(0.6%)과 사망만인율 상승률(0.01p)을 감안해보면, 사망자 발생률도 다소나마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업무상사고를 보면 재해자수는 40,77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로 7.3%가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6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7명(13.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업무상 질병자수는 3,617명, 업무상질병사망자는 3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7%, 1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계를 보면 업무상 사고재해자의 경우 제조업(14,216명, 34.9%), 5~49인 사업장(19,967명, 49.0%), 50세~54세 근로자(6,873명, 16.9%), 전도재해(10,189명, 25%)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사고성 사망자는 건설업(273명, 40.9%), 5~49인 사업장(273명, 40.9%), 60세 이상 근로자(145명, 21.7%), 추락재해(232명, 34.8%)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외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는 제조업(1,464명, 40.5%), 5~49인 사업장(1,431명, 39.6%), 60세 이상 근로자(675명, 18.7%), 요통질병(1,807명, 50%)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어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로 한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동안 재해가 증가한 영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면 안전관리 위해 범정부 협력체제 가동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은 9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 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 등 2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와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50㎡, 주택 200㎡)의 해체·철거 시 일률적으로 석면의 함유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슬레이트는 제조 시 백석면을 15~20% 넣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석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시 신고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 철거·별실신고는 국토부, 작업신고는 고용노동부, 수집·운반·매립신고는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과제는 관련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韓-日 산업안전보건 협력강화

한국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교류가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최근 일본 동경에서 일본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이사장 히에아이 세키자와)와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산업재해예방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체결은 지난 1998년에 양기관이 맺은 산업보건분야 협정체결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교류를 포함해 교육분야에 대한 상호교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정체결에 따라 양기관의 교육원은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공동 개발하고, 인적 교류, 기술자료 및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는 공단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내 예방문화 분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단의 최대열 교육홍보이사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 산업안전보건 중심국가”라며 “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양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1964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재해예방단체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기술지원 및 연구,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 교육센터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매 6개월마다 검사받는다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스 등 17종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정위험부분에 대한 방호조치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심기 등 6종의 위험기계·기구 등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제품, 시설물, 기계·기구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면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타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법에 의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이중검사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 또는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안전인증 적용대상에, 산업용 로봇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된 원심기·공기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로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인증 적용 대상에 추가된 기계톱(이동식)은 위험

도가 매우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밖에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자동차제조업, 철강업 등 8개 업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업법상의 안전검사는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건기법에 따른 검사(2년에 1회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는 사실상 건기법에 따라 2년에 1회만 실시가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타워크레인 마스트, 볼트 등의 자체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인과관계입증 책임 사업주에게 부담해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그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재를 입었음에도 재해와 업무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가을철 대표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에 주의 요구

고용노동부가 야외직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각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다.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들 몸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킨다. 이 병은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병하면 피부발진, 38℃이상의 고열, 심한 두통이나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폐렴 등의 질환이 있다면 합병증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쯔쯔가무시균은 산림업,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농업, 임업, 조경 및 제조작업 등 야외 활동에 노출된 근로자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사전에 예방수칙을 잘 지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